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가단526810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도형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조홍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종석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2020. 12. 24.부터 착공계 제출일(착공승인일)까지로, 계약금액을 27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834,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3. 10. 계약기간을 2020. 1. 1.~ 실시계획승인 시까지로, 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타결합의서의 정산일자는 2019. 12. 30.까지 지급한 금원 1,405,000,000원으로 정산하며, 2020. 1.부터 지급한 금원을 용역총금액에 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3.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2020. 10. 23. 10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가 100,000,000원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2020. 10. 23. 당시 원고가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소외 회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또한 지체된 상황이었다.
- ② 이러한 급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용역대금이 송금될 경우 세무처리로 인해 즉시 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의 동의 하에 원고가 피고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어야 할 용역 결과물을 원고의 대표이던 E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피고 개인계좌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기관은 이에 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정연